



2006년도

# 저술 및 출판지원사업 신청요강

2006. 7. 19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식확산팀)

## 저술 및 출판지원사업 주요사항 요약 및 신규대비표

항목	2005년	2006년	비고
1. 지원예산	-	○ 저술 및 출판 : 1,500백만원	
2. 지원분야	-	○ 저술 및 출판지원 : 인문사회분야	
3. 지원대상	-	○ 저술 및 출판지원 - 저술지원 : 인문사회 분야 우수 저술 - 출판지원 : 최근 5년내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4. 지원형태/ 규모(년/과 제당)	-	○ 저술 및 출판지원 - 저술지원: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출판지원 · 출판사 지원금: 과제당 10백만원 · 원고교정료(연구자): 과제당 5백만원(해외 박사학위 논문은 10백만원)	
5. 지원기간	-	○ 저술 및 출판지원 : 1년	
6. 심사절차	-	○ 1단계 요건심사 ○ 2단계 전공심사 ○ 3단계 종합심사	

#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	1
1. 사업목적 .....	1
2. 지원방향(전략목표) .....	1
II. 사업내용 .....	1
1. 지원분야 및 대상 .....	1
2. 지원예산 .....	1
3. 지원규모 및 기간 .....	1
III. 신청 .....	2
1. 신청자격.....	2
2. 신청기간 .....	3
3. 신청방법 .....	3
4. 온라인 신청절차 .....	3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4
IV. 심사 및 선정 .....	6
1. 심사절차 .....	6
2. 심사방법 및 내용 .....	6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8
1. 연구비 지급 .....	8
2. 연구비 관리 .....	8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9
1. 결과보고서 제출 .....	9
2.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10
3. 연구결과 발표물에 대한 사사표시 .....	10
4. 연구결과 사후관리 .....	11
5. 연구성과 Follow-up시스템 .....	11
VII. 간접연구비 지원 .....	11
VIII. 기타사항 .....	12

(붙임1)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요령 및 양식

(붙임2) 2006년 저술 및 출판지원 FAQ

##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 1. 사업목적

저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던 연구자 및 신진연구인력들의 저술 및 출판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촉진함

### 2. 지원방향(전략목표)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술활동 장려
- 학진 학술총서의 통일적·지속적 출간을 통한 사업성과의 체계적 축적 및 확산

## II. 사업내용

###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나. 지원대상

- 저술지원 : 전체 목차 및 50%이상 완성된 인문사회분야 우수저술원고 단, 논문일 경우 300P 이내
- 출판지원 : 최근 5년내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저술원고

다. 지원형태 : 단독 및 공동연구

2. 지원예산 : 1,500백만원(120과제 내외)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저술지원 :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출판지원
  - 출판사 지원금: 과제당 10백만원 (출판사는 재단이 지정)
  - 원고 교정료(연구자) : 과제당 5백만원
  - 원고 번역료(연구자) : 과제당 5백만원(단, 해외 박사학위 논문에 한함)

나. 지원기간 : 1년 이내

※ 연구개시일 : 11월 1일

### Ⅲ. 신청

#### 1. 신청자격

##### 가. 저술지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SCI급(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함
- ※ 연구전임인력은 업적 요건 대상에서 제외
-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단, 상기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지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협약 당시 자격을 연구 종료시까지 인정함(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시에도 보조원 인정)

##### 나. 출판지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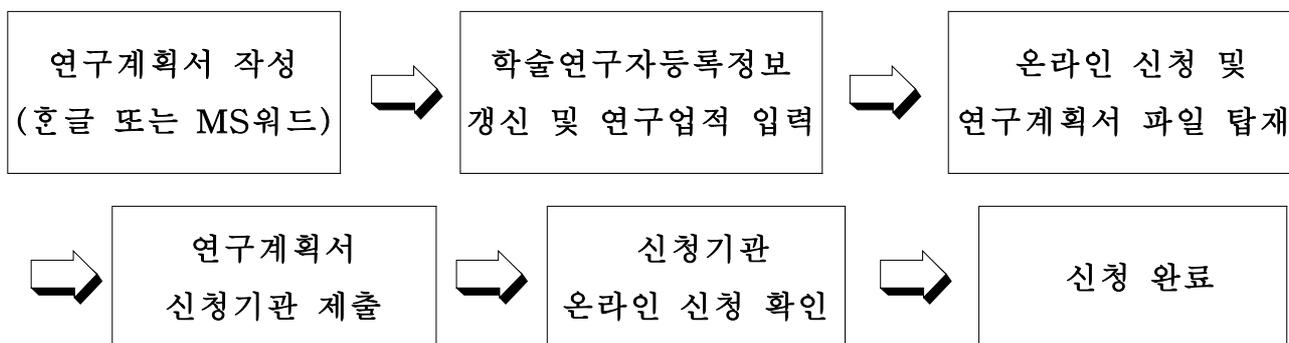
-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2001. 2월 - 2006. 8월 취득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 2006. 8. 9(수) 09:00 ~ 8. 25(금)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온라인 신청절차



####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요약문” “저술원고 및 출판지원시 논문수정보완한 저술원고”를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신청 전에 훈글 또는 MS워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함
- 3)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단,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술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온라인 신청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 4)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지원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요약문"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저술원고 및 출판지원시 논문수정보완한 저술원고"도 연구계획서 양식에 같이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를 통한 연구비 신청은 제한함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함
- 3) 대표업적은 "**Ⅲ-1.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논문을 인문사회·예술체육분야는 3편
  -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지역별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기한 내 연구계획서 미 탑재과제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됨

##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자 소속기관의 중앙관리 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계획서, 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제출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만일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기관 확인 시한 : **2006. 8. 30(수) 18:00까지**
  - 해당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 가. 연구비 신청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진인력방문연구지원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의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며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연구참여 제한

- 본 학술성과확산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 개발 연구과제 및 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과 과학재단 이관사업 중 2004년도에 선정된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 우수여성과학자도약지원연구,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연구지원사업의 계속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원사

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  
 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인건  
 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2. 31. 이전인 과제  
 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  
 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
-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  
 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  
 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 IV. 심사 및 선정

###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재단
2단계	전공심사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단계	종합심사	○ 최종선정과제 확정	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

### 2. 심사방법 및 내용

####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 및 서면검토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등 검토

####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연구주제 (50)	독창성 (30)	연구주제의 독창성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연구방법의 독창성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계획 (30)	연구내용 및 방법 (30)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20)	선행연구 (10)	선행연구의 검토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인용 및 참고문헌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실적 (10)	연구실적의 우수성	○ 저술을 완성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갖추었는가

※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
- 심사내용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 최종 선정과제 확정(정책적 고려 10% 지원방안 포함)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1. 연구비 지급

####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선정 확정 후 지급

#### 다. 연구비 사용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 저술지원 : 착수금 50% 지급 후 결과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잔액지급
  - 출판지원 : 협약체결 후 집행

###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총괄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 결과보고서 제출

#### 가. 저술지원

-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으로 제출
- 3) 제출자료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저술완성원고(A4용지로 제본하여 제출)
  - 연구요약문(국·영문) 1부

※ 연구비는 원고료로 지급했으므로 연구비집행의 정산은 생략함
- 4) 평가 및 평가결과 처리
  - 평가주관 :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출판적합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해 저술연구비 잔액을 지원함
    - 지원유보 : 수정 저술원고를 제출케 하여 재평가함
    - 지원중단 : 출판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판정될 경우 지원중단 조치하고 잔여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지원사업에 신청을 제한함
- 5) 저술결과물 출판
  - 출판추진 : 평가결과 출판적합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해 학진 학술총서로 출판을 추진함
  - 저작권 관련 사항 : 진 학술총서로 출판된 저서의 저작권은 출간일로부터 5년간 재단이 소유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구자에게 귀속됨. 출판인쇄는 1천부를 초과하여 판매될 경우 저작권자에게 귀속됨

## 나. 출판지원

1) 제출시기 : 지원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제출자료

- 출판완료된 도서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재단 소정양식)
- 연구요약문(국·영문)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2.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작성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 3. 연구결과 발표물에 대한 사사표시

- 연구결과 발표물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저술은 2006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6-○○○-○○○○○○○).”

#### 4.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발표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학진 학술총서의 경우는 e-book 제작을 추진함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대학 산학협력단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 5.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적인 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함

### VII. 간접연구비 지원

#### 1. 지원대상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 2. 지원기준

- 2005년도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지원
  - ※ 특별연구시설비의 간접연구비 지원은 없음

#### 3. 지원비율

- A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15% 지원
- B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10% 지원
- C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5% 지원

- 등급외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3% 지원

4. 지원시기 :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시 일괄 송금

5. 사용범위 :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비

## VIII.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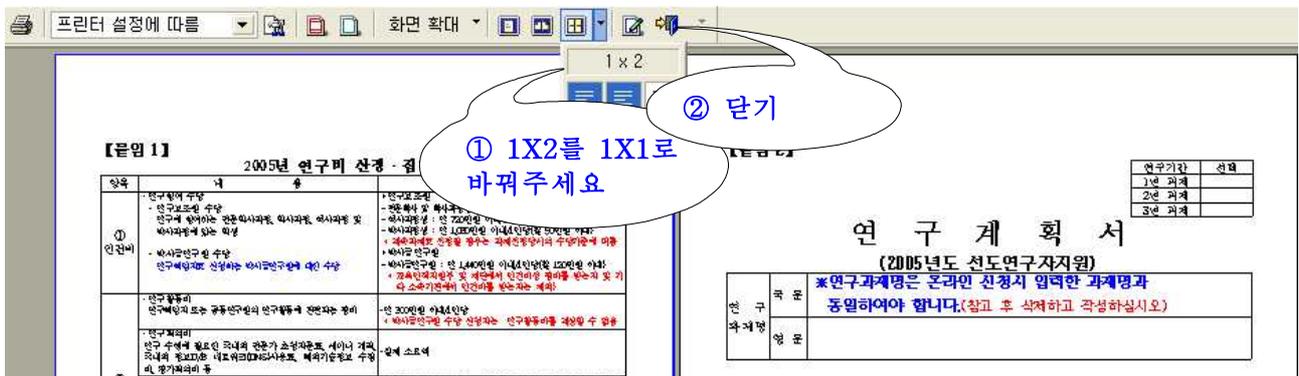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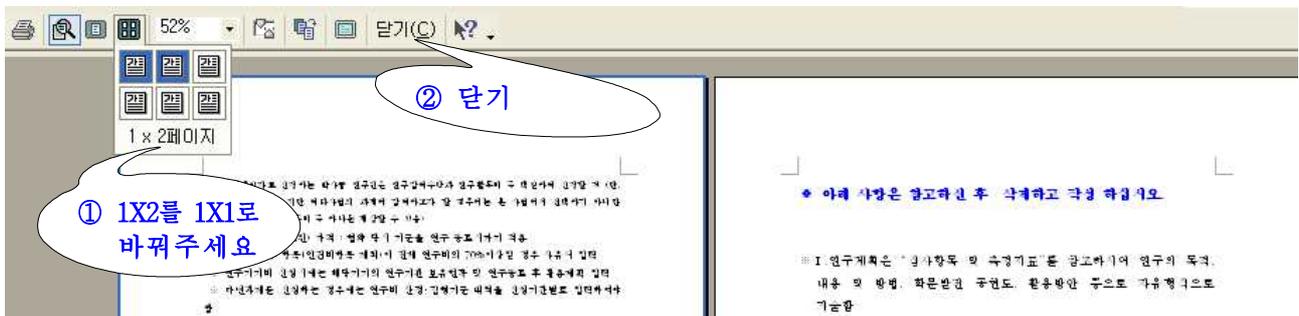
#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 요령 및 양식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시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인쇄 화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미리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화면에 2쪽 이상이 보일 경우, 아래 각 그림의 ①과 ②를 차례대로 실행한 후 저장하여 주십시오. 저장 후에는 인쇄 미리보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화면에 1쪽만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MS Word]**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재단이 심사를 위하여 PDF파일로 변환하게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채 위 형태의 파일을 탑재하시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탑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연구계획서】

※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 과제번호	재단에서 과제번호를 기재 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는 기 재하지 마시오.
--------	---

# 연구 계획서

(2006년도 저술 및 출판지원)

연구 과제명	국문	※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 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후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영문			
연구형태	단독	※ 해당 연구형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공동연구원수	명
신청연구비	천원	원고매수 (예상)		매

# I. 연구계획

##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독창성과 학문 발전의 공헌도,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 ※ 연구계획서(연구주제, 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0매 이내로 작성함  
(연구업적 요약문 제외)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함

## Ⅱ. 연구추진계획

년 월	연구수행내용	비 고
2006. 11		
12		
2007.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2】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요약문 번호	
<b>연구업적 요약문</b>			
연구업적 제목 (논문, 저·역서, 특허)			
업적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연구 참여자수	1명 ( )   2명 ( )   3명 ( )   4명 ( )   5명이상 ( )		
<p>▣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p>			

## 【붙임 2】

# 2006년도 저술 및 출판지원 FAQs

### 1. 복합학에 해당되는 과학기술사와 같은 학문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 지원분야는 인문사회분야에 해당되는 과제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과학기술사와 과학철학등 처럼 인문사회분야에 해당되는 학문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연구비 잔액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선정된 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재단의 정책방향에 의거 최고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그 평가 결과에 의거 연구비 잔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계속지원(A·B급), 지원유보(C급) 및 지원중단(D급)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지원유보 결정의 경우엔 연구비 지급을 유예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 제출된 수정보고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지원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의거 연구비 잔액을 전액 회수조치하며, 향후 2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연구비 신청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3. 출판과 관련하여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저술중인 결과물에 대하여 출판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니요. 저술중인 결과물에 대하여는 출판비를 추가로 지원할수 없습니다.

5. 출판을 담당할 출판사는 어떻게 정해야 하며, 판권은 어떻게 됩니까?

⇒ 출판지원에서 담당할 출판사는 재단에서 출판사를 지정하며,

⇒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출판적합으로 판정된 과제는 재단에서 지정한 출판사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총서”로 출판될 예정이며,

⇒ 학술총서로 출판된 저서의 저작권은 출간일로부터 5년간 재단이 소유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구자의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 문의 : 지식확산팀

Tel (02) 3460-5552~5 Fax (02) 3460-5559

- 전산관련 문의(온라인 신청 등) : 학술정보팀

Tel (02) 3460-5541~7 Fax (02) 3460-5549

